

관세사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제5조의2제1항 관련)

기관명	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
기획재정부	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등 관세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
관세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관세행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
조세심판원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관세에 관한 심판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

비고: 각 기관별 시험과목 일부면제 관세행정분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부서명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세사시험 공고 전에 해당 기관의 직제 변동 연혁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